

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행위 위반 조사 거부 등의 행위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
- ② 진흥공단은 매 연도말까지 다음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

홍공단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을 명확히 규정(별표2, 별표4, 별표5의2)

다. 제2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자의 투표권 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상향(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운영비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

② 진흥공단은 다음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해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

별표1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검
정부터 적용한다..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
(제6조제2항 단서 관련)

구분	자격 종목
1. 전문스포츠지도사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스키
2. 생활스포츠지도사	스키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 바이애슬론 · 크로스컨트리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스키
5. 노인스포츠지도사	스키

[별표 2]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기관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해당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당해 연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응시자의 자격취득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5호	시정권고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별표 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	법 제12조제1	자격취소		

게 대여한 경우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항제3호 법 제12조제1항제4호 법 제12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18개월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법 제12조제1항제8호	서면경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18개월

그 형이 확정된 경우	9개월	18개월	2년
3)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u>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u>	<u>2개월</u>	<u>4개월</u>	<u>6개월</u>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기관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해당 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4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2 제4항제4호	시정 권고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

부정행위자	포상금 금액
1. 법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000만원 이하
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억원 이하
3.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	1,500만원 이하
4. 법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1,500만원 이하
5.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
6.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1,500만원 이하
7.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1,500만원 이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2(운영비의 산정 등) ①</u> <u>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u> <u>는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u> <u>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u> <u>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u> <u>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u> <u>② 진흥공단은 다음연도 체육진</u> <u>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u> <u>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u> <u>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u> <u>정해 매 연도말까지 문화체육관</u> <u>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u> <u>다.</u> <u>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u> <u>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u> <u>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u> <u>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u> <u>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u> <u>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u> <u>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u> <u>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u> <u>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